Sports Safety Manual

스포츠안전매뉴얼

운영자용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목차

1장. 스포츠안전 이해하기 ····· 3
1. 스포츠안전이란? ····· 3
2.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 ····· 4
3. 안전한 스포츠 환경 ····· 5
4. 안전한 스포츠 활동 우선과제 ····· 5
5. 스포츠안전교육은 왜 필요한가? ····· 7

2장. 스포츠 이벤트 운영하기 ····· 8
1. 스포츠 이벤트 운영의 이해 ····· 8
2. 안전한 스포츠 이벤트 운영 목표 설정하기 ····· 9
3.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한 이벤트 운영자의 역할 ····· 10

3장. 스포츠 이벤트 전 준비사항 ····· 12
1. 스포츠안전관리 매뉴얼 ····· 12
2.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한 참여자 관리 ····· 17
3. 시설 및 장비 사전 점검 ····· 22
4. 안전요원 교육 ····· 29
5. 유관기관 협력 ····· 34
6. 꼭 숙지해야 할 필수안전지식 ····· 36
7. 응급처치 ····· 41

4장. 스포츠 이벤트 운영 중 주의사항 ····· 45
1. 안전한 스포츠 이벤트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 45
2. 스포츠 이벤트 진행 중 운영자 실행 사항 ····· 48
3. 사고 발생 시 조치 ····· 48

5장. 스포츠 이벤트 후 확인사항 ····· 51
1. 관중 및 참여자 퇴장 시 요령 ····· 51
2. 장비 및 시설 유지 계획 ····· 54
3. 스포츠 이벤트 평가하기 ····· 54

[부록]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100% 활용하기 ····· 57

1장

스포츠안전 이해하기

1. 스포츠안전이란?

스포츠 활동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대처**하는 **행동!!**

안전사고 예방의식 확산 → 위험요소 사전확인 및 제거 → 안전사고의 신속한 처리

안전하고 행복한 스포츠 활동

- 스포츠안전 계획수립
- 스포츠안전 예방교육
- 안전규칙 준수 생활화 홍보
- 스포츠안전 위해 요소 제거
- 스포츠안전사고 즉각 대처 및 사후관리

2. 연도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12~'16년 8월까지)

기준년도	상품명	가입자수	사망	후유장애	돌연사	상해사고	배상책임	합계
2012년	합계	761,399	6	2	2	1,899	246	2,155
	1년형	94,405	5	2	2	1,530	245	1,784
	단기형	590,289	1	-	-	367	1	369
	주최자	76,705	-	-	-	2	-	2
2013년	합계	905,572	1	0	3	1,676	234	1,914
	1년형	85,875	1	-	2	1,317	231	1,551
	단기형	717,372	-	-	1	357	2	360
	주최자	97,312	-	-	-	-	1	1
	행복나눔	5,013	-	-	-	2	-	2
2014년	합계	1,258,214	1	5	0	1,363	305	1,674
	1년형	82,128	1	4	-	1,043	302	1,350
	단기형	659,051	-	1	-	251	1	253
	주최자	429,990	-	-	-	48	1	49
	강습회 및 워크숍	87,045	-	-	-	21	1	22
2015년	합계	4,042,478	5	4	0	1,617	315	1,941
	1년형	73,704	3	3	-	891	301	1,198
	단기형	444,082	-	1	-	166	1	168
	주최자	3,440,232	2	-	-	531	12	545
	강습회 및 워크숍	71,027	-	-	-	24	1	25
	참가자안심ALL	13,433	-	-	-	5	-	5
2016년	합계	5,560,038	5	4	0	1,208	222	1,439
	1년형	59,817	2	2	-	473	196	673
	단기형	176,638	-	2	-	111	1	114
	주최자	5,268,656	3	-	-	568	24	595
	강습회 및 워크숍	41,514	-	-	-	32	1	33
	참가자안심ALL	13,397	-	-	-	24	-	24
	전문체육인	16	-	-	-	-	-	0

출처 : 스포츠공제서비스 통계('12~'16.8,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제외), 스포츠안전재단

- **1년형** : 5인 이상 단체에서 선택 종목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 **단기형** : 행사 참가(운영) 중 선택 종목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5인 이상)
- **참가자안심 'ALL'** : 행사 참가 중 발생한 신체 장해에 대한 실비 보상(5인 이상)
- **주최자배상책임공제** : 체육행사 운영 중 발생한 주최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에 대해 보상
- **강습회** : 선택 종목 강습회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5인 이상)
- **학교 밖** : 학교 밖 생활체육 프로그램 전용(5인 이상)
- **워크숍** : 워크숍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5인 이상)
- **전문체육인상해공제** : 해당 종목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

3. 안전한 스포츠 환경

" 모든 안전사고에는 반드시 발생 원인이 있다 ! "

" 사고의 원인을 사전 제거해야 한다 ! "

4. 안전한 스포츠활동 우선과제

1) 스포츠안전의식 함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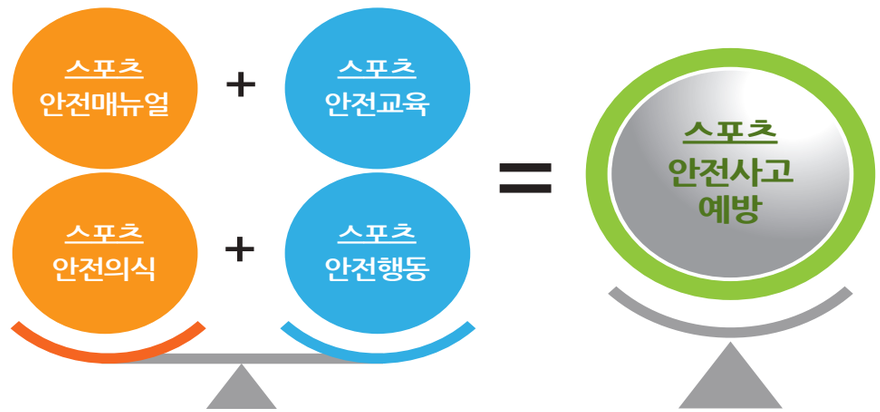

2) 스포츠안전콘텐츠

스포츠안전 매뉴얼 개발 +

① **기본편 : 16종**
- 운영자, 지도자, 참여자 각 대상별에 따른 실내, 실외, 수상, 수중, 항공 5가지 유형스포츠 분야 매뉴얼 (총15권)
- 스포츠안전가이드 (요약본1권)

② **종목별 : 11종**
- 야구, 축구, 배드민턴, 격투기, 패러글라이딩, 트레킹, 자전거, 스포츠 클라이밍, 오리엔티어링 수영, 스키/보드

③ **특정대상별 : 3종**
- 노인, 지적장애인, 유아

④ **응급처치법 : 1종**

스포츠안전 동영상 개발 +

① **일반동영상 : 8종**
- 기본안전지침, 응급처치 대처요령, 실내, 실외, 수상, 수중, 항공, 스포츠안전가이드

② **종목별 동영상 : 9종**
- 야구, 축구, 배드민턴, 격투기, 패러글라이딩, 트레킹, 자전거, 스포츠 클라이밍, 오리엔티어링

③ **취약계층 동영상 : 3종**
- 노인, 지적장애인, 유아

스포츠안전 홍보자료

① **포스터**

② **브로셔**

③ **다큐멘터리(SBS)**

3) 스포츠안전교육

안전에 대해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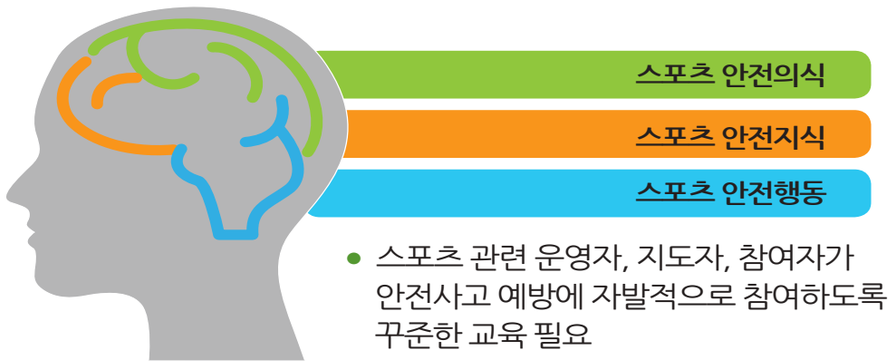

- 스포츠 관련 운영자, 지도자, 참여자가 안전사고 예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꾸준한 교육 필요

5. 스포츠안전교육은 왜 필요한가?

스포츠안전교육은 스포츠현장에서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만들고 사고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스포츠안전 의식 함양 ↑
스포츠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 ↑
안전사고 감소 ↓

✔ **스포츠안전교육 기회 확대**
✔ **정기적인 스포츠안전교육 ⇨ 스포츠안전에 대한 경각심 유발**

2장

스포츠 이벤트 운영하기

1. 스포츠 이벤트 운영의 이해

- 참여자와 관중에게 안전한 스포츠 환경 제공 ⇨ 가장 기본적인 역할
- 스포츠 이벤트 운영자의 안전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사전준비

사례 자신의 체력을 넘는 활동으로 인한 사고

"마라톤 참가자 달리던 중 혼절... 응급처치 후 회복"

지난 OO일에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일반인 참가자 2명이 달리던 중 혼절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A씨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은 후 호흡이 돌아왔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했다. 사고가 나고 불과 몇 시간 후 같은 대회에 참가한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한 때 심장이 정지되기도 했지만 응급처치를 받고 의식을 회복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방 이벤트 운영자는 참여자의 체력 및 건강 상태 파악

- 활동 제한 및 적절한 조치
-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처치 인력 배치

2. 안전한 스포츠 이벤트 운영 목표 설정하기

1) 안전한 스포츠 이벤트 운영 제1 요소

2) 목표 설정의 효과

- 운영자 포함 모든 이벤트 관계자들이 스포츠안전의 목표 공유
- 참여자와 관중이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예시 스포츠 이벤트 운영 목표

이벤트 운영자의 안전철학	• 참여자와 관중의 안전을 내 가족의 안전 같이
이벤트 운영진의 약속	• 스포츠안전을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에 최선
스포츠안전 시스템의 목표	• 스포츠안전 규칙 제정 및 시행 • 각 업무에 안전표준 적용 (안전 프로그램 수행) • 관계자 전원에게 사전 안전교육 실시
스포츠안전에 대한 책임	• 안전에 필요한 보호 장비 제공 • 안전지침 · 장비 및 시설의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해 지시 • 모든 구성원(이벤트 운영자 및 요원)이 스포츠안전규칙에 따르도록 요구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 사고원인 분석 •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이행 평가 및 피드백 조성

3.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한 이벤트 운영자의 역할

1) 함께하는 스포츠안전 관리

다양한 환경에서 신체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스포츠 활동

☞ 빈번한 사고와 상해 발생

사고 방지를 위한 운영자의 자세

- 스포츠안전에 대한 인식 필수
- 사고 예방 활동 참여
- 사고 대처 능력 증진
-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

2) 스포츠 이벤트 운영자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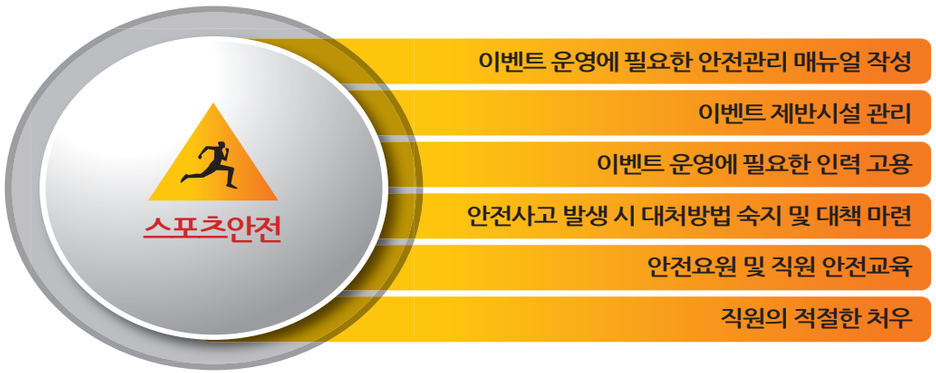

3) 스포츠 이벤트 관련 직원들의 책임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 · 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3장

스포츠 이벤트 전 준비사항

1. 스포츠안전관리 매뉴얼

스포츠 이벤트 규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예측, 대응, 사고 수습, 처리를 위한 지침서입니다.

1) 스포츠 이벤트 유형

- 개최 장소 유형 : 실내, 실외, 수중, 수상, 항공 등
- 행사 유형 : 국내(국제)대회, 교실, 강습, 훈련(연습), 수련 등
- 스포츠 의미 유형 : 대회, 운동, 놀이, 게임, 레크리에이션, 레저스포츠, 여가 등
- 생애주기 유형 : 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2) 안전한 스포츠 이벤트 계획서<예시>

이벤트 개요

- 이벤트 명칭 :
- 이벤트 운영기간 : ~
- 이벤트 안전대책 기간 : ~
- 이벤트 장소 :
- 이벤트 참가자 규모 : 총 명
  - 인 원 : 총 명(심판 : 명), (경기인원 : 명)
  - 자원봉사 : 총 명(남자 : 명), (여자 : 명)
  - 관 중 : 총 명(유료입장 : 명), (무료입장 : 명)
  - 내 빈 석 : 명

행사별 주요내용

- 예시 : 개회식

① 명칭 : 개회식 ② 시간 : ③ 장소 :				
주요행사 내용				
시간	장소	위험내용	위험요소	담당책임자(연락처)

행사장 시설 개요

- 총 규모 : ㎡ (주경기장 명칭 : , 위치 :)
  (보조경기장 명칭 : , 위치 :)

장소별 위험요소

- 예시

위치	세부위치	내용	담당자(연락처)	조치사항

안전한 장비, 인력 설치 현황

- 소화기 설치 수량 : 개 (설치장소 :)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수량 : 개 (설치장소 :)
- 방독면 설치수량 : 개 (설치장소 :)
- 구급차량 : 대(대기장소 :)
  <의사 명, 간호사 명, 산소호흡기 개, 캐리어 대 >
- 안전요원 : 명(배치장소 : 명, 명, 명>

보험가입 현황

- 주최자 배상책임
  - 가입 회사명 :
  - 가입인원 : 명
  - 가입예상범위 : 명(참가선수 명, 임원 명, 심판 명, 관중 명, 특별출연 명)
  - 가입일 : 년 월 일, 보험기간 : 월, 일 ~ 월, 일
- 개별공제
  - 가입 인원수 : 명(주보험회사 :)

기상정보(실외, 수상, 수중, 항공은 필수)/1시간 단위 조사결과

월/일	시간	지역	기온(최저-최고)	강우(설)확률(%)	통계제공처

유관기관별 업무협조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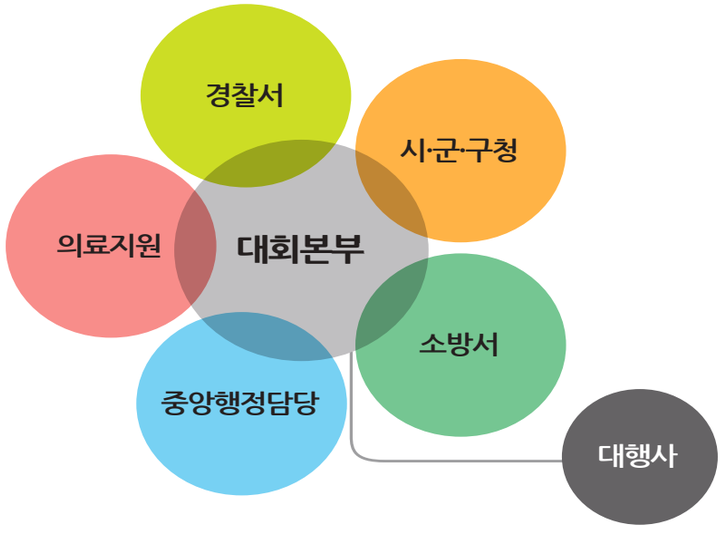

기관명칭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협조체계 내용

스포츠이벤트 안전교육 진행

- 총 회 진행(안전요원 명, 자원봉사자 명, 운영자 명)
  - 안전요원 : 명(배치장소 : 명, 명, 명)
  - 자원봉사자 : 명(배치장소 : 명, 명, 명)
  - 운영자 : 명(담당부서 : 명, 명, 명)

- 스포츠이벤트 안전교육문의
  - 스포츠안전재단(☎ 교육팀 : 02-425-5952)

예시 안전대책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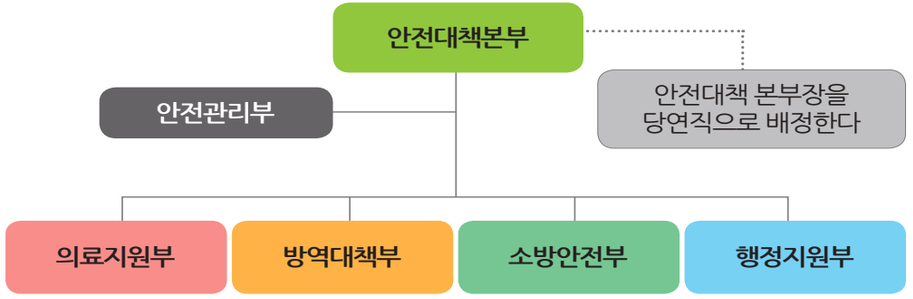

구분	세부구분	소속	직위(급)	성명	연락처	업무
의료지원						
소방안전						
행정지원						

스포츠안전사고 예방 계획수립 흐름도

단계	진행 내용	주요 검토 사항
단기 계획	스포츠 이벤트 위험요소 사전조사	· 스포츠 참여 예상 인원 파악 · 과거 스포츠 사고사례 원인 파악 · 행사 계획서 사전 검토 · 예기치 못한 기상 변화 시 대응 계획 수립
	스포츠 이벤트 시설 안전 관리 실태 점검	· 사고 원인별 시설 점검 – 장비, 시설 노후화 등의 세부사항
	스포츠 이벤트 위험 요소 사전 예방 조치	· 유관 기관과의 안전 관리 체제 구축 · 안전 관리 요원 배치, 적정 인원 결정 및 교육 · 스포츠안전사고가 잦은 구역에 안전장치 설치 · 비상시 대피 계획 수립 · 행정 지도 강화 · 보험 가입 확인
장기 계획	스포츠안전사고 현황 파악, 사후 처리, 대책 방안 등 정보 수집	· 스포츠안전사고 현황 DB 관리
	스포츠안전사고 원인 및 발생 경향 분석, 개선방안 수립, 검토 및 평가	· 스포츠안전사고의 유형별 세부 원인 분석 · 원인별 사고예방 개선 대책 수립 등 검토
	수립된 사고예방 대응책 반영 및 운영상 미비점 보완	· 스포츠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단계별 보완 · 향후 개선을 위한 피드백 역할 · 필요에 따라 매뉴얼 개정

2.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위한 참여자 관리

✔ 운동규칙, 안전수칙, 시설 및 장비 이용법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
✔ 운동 중, 후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이벤트 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참여자 정보 확인

1. 건강 정보 확인
2. 보험 가입 여부
3. 스포츠안전 의식 체크리스트 작성

1) 건강 정보 확인

스포츠 이벤트 운영자는 참가자의 건강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건강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참가자를 사전에 파악

대규모 행사일 경우, 일일이 참가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에 건강 이상 가능성이 있는 참가자에게 자진 신고 유도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를 우선 파악, 행사 진행 중에도 건강 이상 유무를 지속적으로 확인

건강 정보에 기재할 사항

- 개인 신상 정보 : 이름, 성별, 나이, 혈액형,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 건강 정보 : 과거 병력, 현재 몸 상태, 체력 수준
- 특이사항 : 참여자의 특이사항
- 서명 : 작성자의 확인 (반드시 본인이 서명!)
- 과거 참가 이력(위험성 높은 종목의 경우, 초보자 사고 발생 多)

보험 가입 정보에 포함되는 내용

- 보험 종류
- 보험회사명
- 가입연월, 만기연월
- 피보험자명

예시 **참여자의 건강 및 보험 가입 정보 확인을 위한 질문지**

개인 신상 정보				
이 름		집 주 소		(사진)
성 별				
생년월일		연 락 처		
혈 액 형		긴급연락처		

병력 확인서 (아래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이 있으면 체크(○)해 주세요.)	
1) 스포츠 활동 이후 의학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적이 있습니까?	
2) 진행 중인 만성 질환이 있습니까?	
3) 하루 이상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4)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5)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까?	
6)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7) 운동 중 혹은 운동 후에 가슴에 통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8) 심장 질환이 있습니까?	
9) 가족 또는 친인척 중에 심장 질환 혹은 50세 전에 돌연사로 사망한 자가 있습니까?	
10) 두부 외상이나 뇌진탕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11) 쓰러지거나 무의식 상태, 또는 기억을 잃은 적이 있습니까?	
12) 발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13) 두통이 잦거나 심합니까?	
14) 빈혈이 있습니까?	
15) 더운 날씨에 운동하다가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16) 운동 중이나 이후에 기침을 하거나 호흡이 곤란합니까?	
17) 천식이 있습니까?	
18) 안경을 쓰거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합니까?	
19)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탈골된 적이 있습니까?	
20) 머리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21) 목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22) 허리에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23) 위에 명시되지 않은 부상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보험 가입 정보 (본인 관련 스포츠 활동 보상보험 가입정보를 기록해 주세요.)				
보험종류	보험회사명	가입연월	만기일	피보험자명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본인은 상기 내용을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날짜 _____. ___. ___

본인 또는 법적 보호자 이름 _____ 서명 _____

2) 보험 가입 여부

(1) 스포츠 보험은 왜 필요한가?

스포츠 활동 사고 증가

-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통계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8천여건의 부상 또는 사망!
  (일반 보험회사 가입자나 미보험자 수 제외)

사고 및 부상 증가, 사후 관리 측면에서 스포츠 보험은 반드시 필요

- 생활체육진흥법 : 보험 가입 의무화 (2016년 3월 시행)

[주최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생활체육 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 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스포츠 이벤트 운영자의 안전한 스포츠 환경 필요성 인식이 중요

(2) 스포츠안전 보험의 대상과 역할은?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 체육활동자 본인(참여자) / 체육시설 운영자 / 체육활동 지도자

사고 원인별 보험 구분 역할

사고 발생	사고 책임	피보험 이익	보험 종류
	체육 활동자 본인	체육 활동 중 상해	상해보험, 스포츠안전공제 서비스(임의보험) 전문체육인공제 서비스(임의보험)
	체육시설 운영자 (등록 · 신고자)	시설운영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 보험(의무보험)
	체육활동 운영(지도)자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주최자 배상책임공제 서비스(의무보험)

알아두기 **스포츠안전 보험 종류와 법규**

의무보험
(주최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

주최자 배상책임 보험의 의무화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보험 등 가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관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 25조(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 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③ 법 제26조 단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련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 경영하는 자' 를 말한다.

법 제40조(과태료)

제 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임의보험
(스포츠 안전공제)

스포츠안전 공제서비스

'01년도에 안전한 생활체육을 모토로 하여 대한체육회((구)국민생활체육회)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제 상품 출시
생활체육 활동 중 사고를 담보하는 개인 상해보험 상품으로는 현재 스포츠안전재단을 통해서 가입 가능

3) 스포츠안전 의식 체크리스트 작성

스포츠 이벤트 운영자는 참여자들에게 스포츠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스포츠안전 의식 체크리스트

- 참여자들의 격렬한 스포츠 활동으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경우 활용
- 스포츠 활동으로 생길 수 있는 부상과 안전사고 설명

목적

- 참여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줌
- 안전사고 예방

예시 **스포츠 활동 안전 의식 체크리스트**

1.	격렬한 신체적 활동을 수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2.	상대방과의 충돌 및 넘어짐에 의해 생길 수 있는 골절, 타박상, 뇌출혈 등에 대한 상해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있는가?	
3.	심한 태클 등으로 인한 상대방의 부상이 예상 될 때에도 경기를 계속 진행할 것인가?	
4.	스포츠 매너를 지킬 것인가?	
5.	필요한 보호 장치 및 충격 흡수 방법에 대해 알고 있는가?	
6.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7.	안전한 경기를 위하여 안전 규정을 준수할 것인가?	
8.	안전 규정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였거나 목격했을 경우 이를 즉시 코치나 감독에게 보고할 것인가?	
9.	스포츠안전을 위해 코치나 이벤트 관계자 및 감독의 적당한 요구에 따를 것인가?	
10.	신체적인 컨디션에 전혀 문제가 없는가?	

3. 시설 및 장비 사전 점검

시설과 장비는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데 기본적으로 점검해야할 사항이며, 참여자들의 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설과 장비의 사전 점검 시에는 스포츠 이벤트가 진행되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벤트와 관련된 부대시설의 이상 유무도 파악해야 합니다.

1) 이벤트 장소 점검

안전한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위한 이벤트 장소의 확인과 점검 필수. 특히 실외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스포츠 종목 및 참가자 수를 고려한 장소 선택 및 기상 변화에 대비한 계획이 중요합니다.

사례 날씨에 의한 실외 스포츠 부상

"제주 국제 철인3종 경기서 사이클 빗길 사고 6명 중경상"

제주 서귀포시 일대에서 열린 '2014 제주 국제 철인3종 경기대회'에서 사이클 빗길 사고가 이어져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일 오전 9시 3분 서귀포시 서호동에서 대회에 참가해 사이클을 타던 A(43)씨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상을 입는 등 오후 3시 6분까지 5건의 빗길 또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대회 참가자 등 4명이 중상, 2명이 경상을 입어 서귀포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예방 이벤트 운영자는 날씨에 따른 환경 변화 파악

- 실외 스포츠 이벤트 → 날씨의 영향 큼
- 우천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면 즉시 이벤트 중단!!
- 날씨를 무시하고 이벤트 강행하여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 이벤트 운영자 책임!!

실외 스포츠 이벤트 시 고려사항

안 전 요 원	이벤트 장소의 규모 및 참여자 수 고려 / 종목 특성 고려
기 상	우천 시 대응 내용
위 험 요 소	안전사고 발생 가능 시설물이나 도구 제거
구조 변경 요소	이벤트에 용이하도록 시설물 구조 변경
경 기 장 준 비	잔디, 각종 표시물, 라인 페인트, 네트
관 중 석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소 파악
휴 식 시 설	접근성 / 위생 및 안락함

2)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점검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점검도 매우 중요합니다. 위생뿐만 아니라 경기장 주변시설도 사건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운영자는 행사 외적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주 차 시 설	· 주차시설 공간 확보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표시 · 필요 주차 관리원의 수 · 주차시설의 표시
식음료 공급 설비	· 음료의 위치 및 충분한 수량 확보 · 저장 및 보관방법 · 참여자에게 제공될 음식물 신선도 확인

부 대 시 설	· 관중 수를 고려한 화장실 개수 확인
필요장비 및 시설물	· 비상시 필요 전력 확보 · 가스 / 하수 설비
군중 통제 시설	· 바리케이드
통 신 수 단	· 지시 체계를 위한 통신 설비(무전기 등)
이벤트 장소 주변 위 험 요 소	· 이벤트 장소 주변에 공사현장의 여부 · 인화 물질 등 화재 취약 물질 등의 여부 · 산불 발생의 위험성 파악 · 기타 안전사고 발생 요소 파악
위 생 관 리	· 화장실 청결 상태 · 탈의실 확보 및 청결 유지

3) 시설 및 장비점검 내용과 법률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국민체육진흥법 등 체육관계법 중에서 레저스포츠 시설에 관한 법률은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유일함
-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
-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규정
-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 안전·위생 기준을 두어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알아두기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세부사항**

② 무도학원업자 · 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안전 · 위생 기준)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 · 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시설 장비점검에 관한 내용

운영자 및 관리자는 스포츠 관련 장비와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적절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장비와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스포츠참여자의 안전한 스포츠활동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도록 합니다.

알아두기 **시설·장비점검에 관한 관련법 안내**

1. "관리주체"라 함은 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2. "안전 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 측정 · 평가하여 보수 ·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설치검사"라 함은 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검사기관이 시설에 대하여 조사 · 측정 · 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시설의 물리적 ·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 · 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시설에 관하여 안전 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 · 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교육·행정 관리에 관한 준수

운영자 및 관리자는 스포츠 장비·기구·시설 등의 안전성 평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다음과 같이 점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 내용

- 스포츠 시설 및 장비 사용자의 위험 예방 교육
- 스포츠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교육
-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스포츠 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점검
- 운영자 관리자는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기관에게 보고
- 운영자 및 관리자는 사고기록대장을 분석·검토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 스포츠와 관련한 사고조사 및 통계조사의 유지·관리를 통해 사전 예방교육 강화
- 교육을 통한 스포츠관리자 지도자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증진
- 안전·사고예방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및 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 위험한 장비·기구·시설 등에 대한 안전사고 시 조치기준 작성 및 지도·감독
-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을 설치·운영

시설 장비 점검에 관한 준수

운영자 및 관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중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시설 장비에 대한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시설 장비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안전사고 발생 시 처벌

운영자 및 관리자는 스포츠 시설 이용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 또는 3명 이상 동시에 부상
- 사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상 · 출혈 · 신경·근육 또는 힘줄 손상
- 2도 이상의 화상 · 신체 표면의 5% 이상 부상 · 내장(內臟) 손상

알아두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적용 범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설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 및 그 부대시설로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로 나뉜다. 본 법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을 건축물의 2종 시설물로 분류하였으므로 연면적 5,000㎡ 이상의 체육관은 건축물의 2종 시설물에 속한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항, 별표1]

(2) 적용 내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시행**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며, 그 계획을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 **안전 점검 실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물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3년에 1회 이상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별표1의 2]

- **소방시설**

  화재에 의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규(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속적인 유지, 관리, 점검, 직원에 대한 사용법 교육, 정기적인 소방훈련(소화 및 대피, 소방서 협조)이 필요하다.

알아두기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적용 범위

소방시설 등의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서 실내 체육관은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에 속하고 그 외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속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2) 적용 내용

- **체육관의 소방 설비**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은 스프링클러설비, 자동 화재 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제연설비 등의 소방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 1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별표4]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에 대해 폐쇄, 훼손, 변경 등 그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장]

-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소방시설설치유지 미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2장, 제20조 제6항 제1호, 제22조, 제23조]

4. 안전요원 교육

운영자는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실외 스포츠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방법, 응급처치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참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5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수영조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명 이상)을 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 6에는 안전위생기준(대한 적십자사나 법 제 34조에 따른 수영장 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자 2명 이상)이 각각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체육지도자와 수상 안전요원은 그 역할 및 배치목적, 배치기준이 각각 상이한 바 체육지도자와 수상 안전요원은 각각 배치하여야 할 것(수영조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초과시 체육지도자 2명과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 등 총 4명 이상 배치)이며 그에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할 것

1) 교육 내용

긴급 상황 대처 요령

- 소화기 및 소화전의 위치와 올바른 사용법
- 비상 출구의 위치
-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 경로 및 절차
- 화재 신고와 구조 요청에 필요한 전화기의 위치
- 비상 연락체계에 의한 상황전파 요령
- 구급함의 위치와 사용법
-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

소화기 관리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가장 손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소방 기구 중 하나로, 초기 화재 진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시로 관리하여 화재 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설치 및 관리
  - 소화기는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설치
  - 습기가 적고 건조하며 서늘한 곳에 설치
  -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 부식, 소화약제 유무 확인
  -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약제 재충전

  ※ 단, 제조일로부터 8년을 내구연한으로 보고 이보다 오래 됐을 경우 교체 권고 (국민안전처)

- 점검 사항
  - 본체 용기, 손잡이, 안전핀의 변형이나 손상 확인
  - 노즐 등에 이물질 제거
  - 압력계의 압력이 적정 범위에 있는지 확인

-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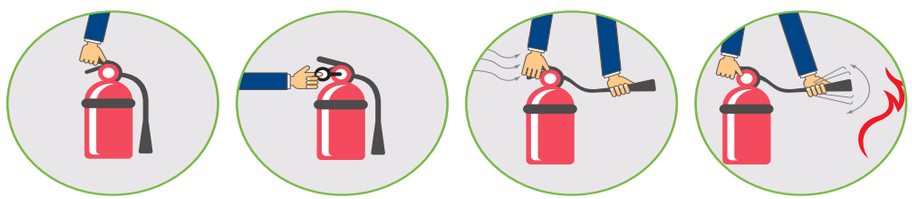

① 소화기를 들고 불이 난 곳으로 이동 ② 안전핀 제거 ③ 바람을 등지고 호스를 불쪽으로 향함 ④ 손잡이를 힘껏 쥐고 비로 쓸어내듯 불길을 향해 발사

※ 단, 불길의 높이가 허리 이상이거나 불이 번지는 상태라면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및 부상 예방 방법

- 이벤트 장소의 시설, 장치, 도구 등에 있는 위험성(미끄러지기 쉬운 계단, 부상 위험이 있는 장비 등) 파악
- 이벤트 장소의 시설, 장치, 장비 등의 올바른 사용법 숙지

예시 안전요원 임무 설정

총괄 책임자		전화번호	
위치별 임무			
위치 / 임무	책임 요원	전화번호	비고

※ 안전요원 계획은 이벤트 계획서에 필수적으로 기입합니다.

2) 교육 방법

안전요원 및 시설 관리자 오리엔테이션

- 안전요원 및 시설 관리자 오리엔테이션은 진행할 스포츠 이벤트 관련 프로그램을 소개, 교육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 직원별 개별 업무를 지도하기 전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안전사항에 대하여 교육하고 안전 방침 및 목표를 숙지시키는 것이 중요

안전요원 수행 업무 교육

- 각 직원이 담당할 안전 관련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방법을 교육
- 신규 직원 채용 시, 직원이 새로운 업무나 성격이 다른 업무를 맡게 될 때 시행
- 해당 직원의 직속 감독자가 실시하는 것이 교육 효과 극대화

운영 책임자의 할 일

- 직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위험 숙지
- 직원의 담당 업무와 일처리 방법 결정
- 직원이 안전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
- 시설의 위험 요소(전기, 천장, 배수 등)를 다루는 시설 관리자 및 작업자는 안전 교육 및 위험 요소의 취급에 대해 더 세심하게 교육
- 직원의 휴식 보장
- 안전요원의 자격여부 확인(자격증)

내부 안전회의

-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회의는 안전 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하고 안전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수행
- 안전회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원과 직속 감독자, 이벤트 운영자가 함께 현장 안전에 관한 현황과 계획을 검토
- 안전회의는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회의 내용

- 지난 회의에서 다룬 의제의 진행 상황을 포함한 이전 회의록 검토
- 지난 회의에서 보고된 사고 및 권고를 받은 시정 조치의 진행 상황 검토
- 지난 회의 이후 실시한 검사 및 시정 조치의 진행 상황 검토
- 직원들의 의견과 우려 사항 검토

정기 안전 교육 프로그램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벤트 운영자, 관련 직원, 시설 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안전 의식을 환기시키고 이벤트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스포츠 이벤트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교육 프로그램

- 현장의 여건과 환경에 알맞은 내용으로 진행
- 안전 세미나(이벤트 현장 위험 요소 취급 방법 및 환자 안전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
- 안전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스포츠안전재단, 소방방재청, 한국 전기 안전 공사 등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 실습 훈련(지역 소방서와 연계한 화재 진압 및 대피훈련, 인근 병원과 연계한 부상자 후송 훈련)

5. 유관기관 협력

스포츠 이벤트 운영자는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례 예방 계획 미수립으로 안한 실외 스포츠 부상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자 60대 경기 도중 사고로 사망"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서 텐덤사이클 1km 독주 경기에 참가한 시각장애인 A(62·여)씨가 경기 중 넘어지는 사고로 사망했다. 1,300여 명이 참가한 체육대회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는 한 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일한 안전대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사고는 결승점을 100여 미터 앞두고 A씨가 탄 자전거가 갑자기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스포츠 이벤트 운영자는 이벤트 개최 전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스포츠 이벤트 안전 협력체계 기관별 역할〉

6. 꼭 숙지해야 할 필수안전지식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 계획부터 현장까지 담당하는 운영자들은 기본적인 응급처치법과 사고대처 단계별 행동을 숙지해야 합니다.

스포츠는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벤트 운영자들은 항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적인 안전지식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급상황에서의 행동 절차(3C)

현장조사 (Check)	119 신고 (Call)	처치 및 도움 (Care)
· 현장은 안전한가? · 긴박한 위험이 있나? · 사고의 유형은? · 환자의 수는? · 도움을 줄 사람은 있나? · 환자의 문제점은?	· 즉시 전화 · 필수 정보 알림 · 질문에 대답 · 전화를 먼저 끊지 않음 · 신고 후 지체없이 처치	· 의식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주위 사람에게 정보를 얻고, 순차적으로 신체의 각 부분 움직임 확인 · 의식이 없는 경우, 기도 유지

1) 현장조사

현장은 안전한가?

상황이 발생한 장소의 안전 여부를 우선 확인합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전한 곳에서 기다립니다. 다음과 같은 곳에는 진입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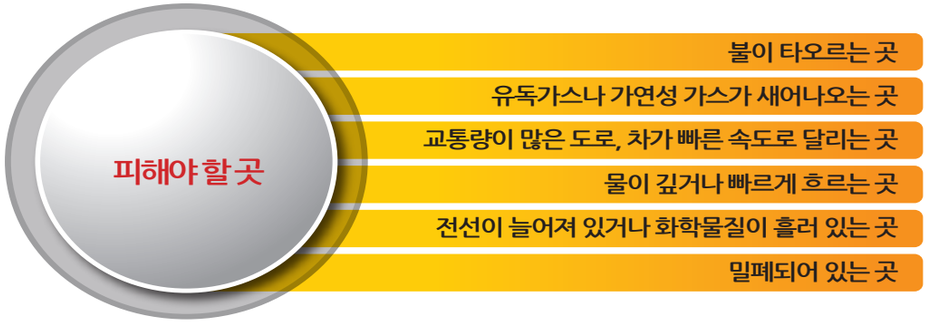

긴박한 상황일 때

심각한 부상을 입은 환자는 옮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긴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는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된 곳으로 부상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조심스럽게 옮겨야 합니다.

긴박한 위험	→	안전이 확보된 곳으로 부상자를 고정시켜 이동

사고의 유형은?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무엇이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켰는지 확인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알면 부상자나 환자에게 어떤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황 : 환자 옆에 쓰러진 사다리가 있다면?

예측

- 이 환자는 자신의 신장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수 있다.
- 머리, 목, 허리, 골반 등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환자의 수는?

사고와 관련된 부상자나 환자의 수는 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깊게 주변을 살펴보면서 환자의 수를 확인합니다

부상자나 환자가 한 사람이 아닐 경우 → 가장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환자부터 도움

도움을 줄 사람은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급상황에서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지목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 요청

- 내가 처치하는 동안 119에 신고하도록 요청(* 요청 시 한 사람을 지목하여 적극적으로 요청)
- 부상자나 동반자에게 환자의 병력 정보 요청

환자의 문제점은?

환자나 부상자에게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증상이나 징후(비정상적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시각, 청각, 후각 이용)

위급상황인 경우

- 의식이 없거나, 심한 출혈,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 횡설수설하는 경우
-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
-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붉거나 푸른 경우

2) 119 신고

119에 신고하는 것은 위급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스포츠 지도 중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발견자는 지체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발견자 119 신고! → 부상자나 환자의 생존 가능성 ↑

예시 119신고 방법

① 응급구조 요청은 119번을 누릅니다.
② 사고 상황(어떤 사고인지, 환자의 상태 등)을 말합니다.
예. ○○○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환자는 ○○○ 상태입니다.
③ 현장의 상세한 위치를 알려 줍니다(주소나 주변의 큰 건물 이름 등).
예. ○○구 ○○동 ○○○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쪽이에요
④ 신고 접수자의 동의없이 먼저 전화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3) 처치 및 도움

응급처치는 부상자의 생존뿐 아니라 완전한 회복과 후유장애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해야 하며 응급의료 종사자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알아두기 응급처치의 법률적 요소 '동의'와 '면책'

- 부상자나 환자에게 의사 결정 능력이 있다면 사전에 동의를 받은 후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 동의를 받기 위하여 내가 누구인지, 어떤 훈련이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부상자나 환자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주고, 응급처치의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부상자나 환자가 내 도움을 명백히 거부한다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어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여 응급처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119에 신고하고, 119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상태를 지켜봅니다.
- 부상자나 환자에게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면, 동반한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의식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등) 부상자나 환자에게 동반자가 없을 경우, 만약 당사자에게 의사 결정 능력이 있었거나, 동반한 보호자가 있었더라면, 내 도움에 동의했을 것이라 판단하고 도울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동의를 '묵시적 동의'라고 합니다.
- 동의 없는 응급처치는 법률적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부상자나 환자의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알아두기 **'선한 사마리아인법'**

-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을 돕는 바람직한 행위를 한 경우, 설혹 그 결과가 나빴더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거나 가볍게 해주는 법을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아래와 같은 면책규정을 두어 위급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 9124호],

시행일 2008.12.14.,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한 면책(법 제5조의 2 신설)

① 일반인(응급의료종사자 혹은 법령에 따라서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지는 자가 아닌 사람)이 위급상황에서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함.

② 응급의료종사자 혹은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지는 자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이 부여받은 자격과 면허의 범위 내에서 제공한 응급의료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책됨.

7. 응급처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입니다.

최초 발견자가 해야할 일

①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상태를 안정시킴

② 추가 손상 예방을 위해 응급처치 시행

1)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정지된 자의 자발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합니다.

심폐소생술의 구분

기본 소생술	· 사고나 질병의 발생현장에서 발견자가 실시 ·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통하여 뇌를 포함한 주요 장기에 산소 공급 ·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유지
자동심장 충격기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및 일반인 사용 허용으로 보다 많은 소생의 기회 확대 · 평소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숙지 필요
전문 소생술	· 이송을 포함하여 전문응급의료종사자에 의해서 실시 · 자발 순환의 회복

심폐소생술의 중요성

심폐기능 정지 후 4분 경과	뇌세포 손상 가능 시작 시간
10분 이상 경과	순환이 회복되더라도 뇌의 생명유지 기능 회복 불가

병원 밖에서 심정지 시 전문 의료인의 도움을 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

심폐소생술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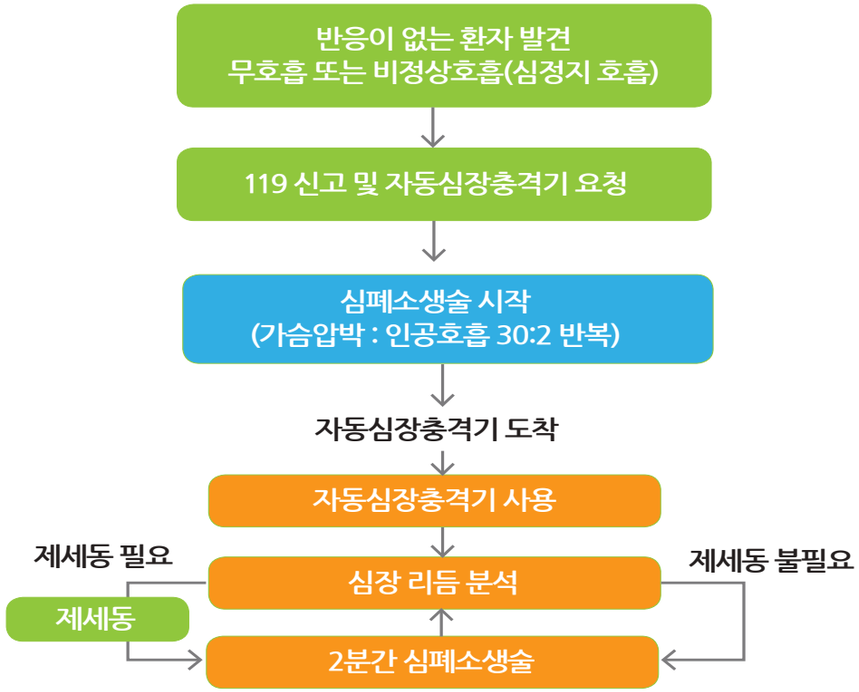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① 반응의 확인

· "여보세요 괜찮습니까?"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거나 괜찮은지 소리쳐 의식 상태를 파악하고 숨을 쉬는지 확인한다.

② 119신고

·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큰 소리로 지목하여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 즉시 스스로 119에 신고한다.
· 주위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면 함께 요청한다.

③ 호흡 확인

· 쓰러진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한다.
· 환자의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 일반인은 비정상적인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가슴압박 30회 시행

· 팔꿈치는 압박 부위에 수직으로 곧게 뻗어 어깨 힘이 실리도록 한다.
흉부 압박 부위 : 양쪽 유두를 이은 가상선 흉골의 중심부를 30회 압박한다.
·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압박 깊이는 5~6cm로 실시한다.

⑤ 인공호흡 2회 시행

· 먼저 환자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한다.
· 머리를 젖힌 손의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잡아 막고, 입을 크게 벌려 환자의 입을 덮는다.
·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뒤 가슴이 부풀어오를 정도로 1초 동안 숨을 불어 넣는다
·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가슴 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를 반복 시행한다.

⑥ 위 ④, ⑤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한다.

<출처 :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 대한심폐소생술협회>

알아두기 **가슴압박소생술(Hands only CPR)**

- 심폐소생술(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 중 인공호흡은 하지 않고 가슴압박만 시행하는 방법

심장성 심정지에서와 같이 저산소들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되면, 심정지의 발생 초기에는 혈중산소농도가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수분간 유지된다.(약 6~8분) 따라서 가슴압박만으로 산소가 들어있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만으로도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단, 익수자의 경우 혈액 내 산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폐소생술(30:2)을 실시하여야 한다.
※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후에도 인공호흡을 정확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놓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슴압박소생술만 권유한다.
※ 인공호흡 2회 후 6초 이내 가슴압박 시행(가슴압박 중단 시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생존율 저하)
대한민국의 낮은 심폐소생술 보급률로 인해 일반인이 쉽게 배우고 접근할 수 있는 가슴압박소생술을 권유하는 것으로 일반인 구조자의 두려움을 없애고 단기간에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ED)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가 되어있는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도구로 의학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① 전원 켜기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 전원 버튼을 누른다.

② 두 개의 패드 부착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패드 2 :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 실제패드는 부착지점에 대한 그림이 삽입되어 있음

③ 심장 리듬 분석

'분석중…'이라는 음성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서 손을 뗀다.

④ 제세동 시행

제세동 시행 멘트가 나올 경우 모두 물러난 후 제세동 버튼을 누른다.

⑤ 심폐소생술 실시

제세동을 실시한 뒤에는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4장

스포츠 이벤트 운영 중 주의사항

1. 안전한 스포츠 이벤트 운영을 위한 고려사항

1) 안전요원 배치 및 감독

이벤트 장소에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면 스포츠 이벤트 참가자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사고를 일으킬 만한 위험한 행동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 시 고려사항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안전 예방 활동 지시
- 이벤트 운영자의 전화번호 및 응급 전화번호 목록, 의료 비상 시 책임과 임무 등의 내용이 적힌 카드 소지 확인
- 통신체계는 운영자의 계획, 지시, 조정 및 통제를 위해 필요한 수단으로써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치를 위해 사전에 통신 체계를 명확히 규정
- 이벤트 진행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운영자 및 안전요원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자가 지속적으로 안전요원들의 배치 현황과 실행 사항 감독

예시 마라톤 대회 안전요원 배치도

2) 협조 기관과의 연락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 실행
- 소방서 및 응급기관과 지원 체계를 유지 ⇨ 출동 대비태세 유지
- 경찰서에서 위험시설 접근로 차단 및 사고 시 신속한 처리, 교통안전 대책 등 지원 체계 유지

3) 행정적 체계

-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구급, 의료반 편성
-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출동
- 스포츠안전대책 본부 탄력적 운영

예시 스포츠안전대책 본부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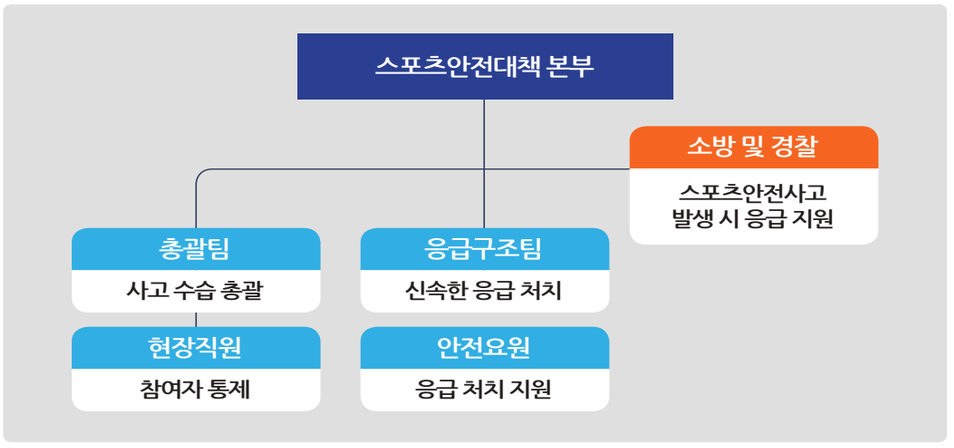

2. 스포츠 이벤트 진행 중 운영자 실행 사항

이벤트 진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벤트 진행 중 지속적으로 감독 및 관리합니다.

안전요원	· 안전요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는지 확인 · 안전요원이 배치가 적절한지 감독 · 안전요원의 복장이 눈에 잘 띄는지 확인
스포츠안전 대책 본부	· 응급 상황 대비 태세 수시 체크
비상 상황	· 안전사고 및 기타 응급 상황 대응 시스템 수시 체크 · 이벤트 장비 및 시설의 지속적인 점검 · 이벤트 진행 상황의 지속적인 점검
참여자 및 관중	· 참여자 및 관중 수 수시 점검 · 관중의 위험한 행동 및 돌발 행동 주시 및 감독
부대시설	· 화장실 및 탈의실 청결 유지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 · 주차시설 및 교통과 관련한 사항 관리 감독

3. 사고 발생 시 조치

1) 공통 사항

초동 조치	· 사고 현장 주변의 안전요원 및 직원이 상황을 확인하여 응급조치 및 신속한 지원 요청 · 사전에 협의한 경찰, 소방, 안전요원, 비상대책반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사고 대처 · 인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에 지원 요청 · 참가자들의 동요 방지를 위한 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방송 실시 · 외부인의 사고 현장 접근을 막기 위한 경찰의 차단 조치
응급구호 조치	· 부상자 발생 시 최초 발견 안전요원이 1차적으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구급, 의료반 요청
지원 요청	· 경찰서, 소방서, 병원의 상호 협조 하에 신속히 처리 · 소방차나 구급차의 지원을 요청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찰은 지원 차량이 신속히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이동지시 및 안내자 배치
행정 사항	· 사고 수습 대책 본부 구성 및 탄력적 운영 · 안전사고 관련 자료 확보 · 사고보고 체계를 통해 사고 조치 상황을 수시 확인

2) 대피 행동 요령

대피 경로 확보

- 안전 비상 계획에 '대피 경로'와 '대피 후 집합 장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요원 및 안전 관리 책임자 숙지
- 대피 후 집합 장소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예. 주차장)
- 계획된 대피 경로 사용 불가 시, 두 방향 이상의 대피 경로 설정
- 대피 경로에 장애물이나 불에 타기 쉬운 물건 제거
- 안전요원은 이벤트 시작 전에 대피 경로를 확인하고 장애물을 제거
- 대피로에 위치한 출구가 개방되어 있는지 확인
- 출구 표시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위치
- 임의로 변경하거나 가려지지 않도록 주의
- 출구와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이나 통로는 출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
- 출구를 출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대피 계획에 포함된 통로 및 계단에 물건 적재 금지
- 눈에 잘 띄는 곳에 층별로 대피로 안내판 설치, 안전요원 숙지

대피 요령

- 이벤트 운영요원은 이벤트 운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관중 대피 유도
- 참가자 및 관중은 이벤트 장소를 빠져나와 지정된 집합 장소에 모인 다음, 안전요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
- 운영요원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대피할 경우 참가자 및 관중들이 뛰거나 앞 사람을 밀지 않도록 안내
- 대피가 끝난 후 집합장소에서 안전요원은 모든 사람들이 대피했는지 확인하고 이벤트 운영책임자에게 보고
- 운영요원은 참가자 및 관중들이 소방관이나 안전관리 책임자의 확인이 끝나기 전까지 이벤트 장소로 절대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3) 사고보고 체계

최초발생	응급 구조팀 (의료진)	안전관리 책임자
· 신고 및 상황 전파 · 참여자 통제 · 사진 촬영 / 목격자 확보	· 응급조치 실시 · 2차 부상 예방	· 스포츠안전대책 본부 구성 · 관련 협조기관 연락 · 사고 경위 조사 및 대책 수립

*사고 수습의 책임은 행사 주최 또는 주관 기관에 있음

예시 비상 시 조치사항 및 연락처

구분	조치 사항	책임자
신 고	소방서 (☎) 경찰서 (☎)	○○○ (☎)
대 피 유 도	○○위치 (성 명) ○○위치 (성 명)	○○○ (☎)
화 재 진 압	○○소방서 (☎)	○○○ (☎)
응 급 의 료	○○구급차 (☎) ○○병 원 (☎)	○○○ (☎)
차 량 통 제	경 찰 서 (☎) 안전요원 (☎)	○○○ (☎)

5장

스포츠 이벤트 후 확인사항

스포츠 이벤트 종료 후 확인 사항

1. 참여자 및 관중 퇴장 시 요령
2. 장비 계획 및 시설 유지 계획
3. 이벤트 평가

1. 참여자 및 관중 퇴장 시 요령

- ✔ 다수의 인원 퇴장 시 사고 발생 빈번 ⇨ 계획된 출구로 분산 퇴장 유도
- ✔ 흥분한 관중에 의한 소란, 도로 점거, 위해물 투척 등 이벤트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통제
- ✔ 쓰레기는 관중이 자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 및 홍보

1) 동선 결정

동선 : 군중을 포함한 사람이 이동하는 경로로 크게 5가지로 구분

주 동 선	대부분의 군중이 사용
보 조 동 선	소수가 사용하거나 주동선으로 부족한 경우 사용
연 락 동 선	주요 장소와 다른 주요 장소를 연결
VIP 동 선	VIP 전용
긴 급 동 선	사고나 재해 시 경찰, 소방, 구급 등 관계자가 사용

동선 결정 시 검토사항

- 군중이 자유롭게 행동했을 때의 동선을 예상하여 군중이 과밀 및 과소되는 장소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
- 주동선 설정 후 긴급동선, 업무용 동선, VIP 동선 설정
- 기본 동선을 결정 할 때에는 군중이 정지하는 장소, 유동하는 장소, 통로 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장소, 계단과 경사지가 있는 장소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
- 적정 밀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동선 변경 또는 일시적인 규제를 계획

2) 군중 정렬

군중 정렬 : 혼란을 막기 위해 군중을 적당히 나누어 정리 및 유도하는 활동

- 혼란이 발생한 후에는 정렬하기가 어렵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란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군중을 나누거나 정렬 또는 유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3) 군중 정렬 방식

직진 방식 : 군중을 2열 또는 4열종대로 정렬시켜 퇴장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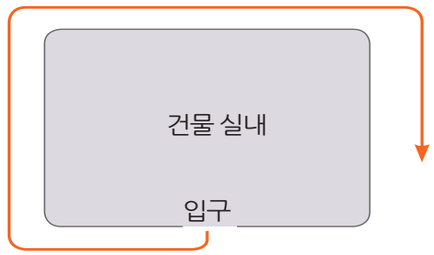

- 장점 이동이 간단하기 때문에 군중도 쉽게 납득하고 따라줌
- 단점 한 방향으로 줄이 길게 늘어지기 때문에 폭이 넓을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사행 방식 : 뱀(蛇) 모양의 정렬 방식으로, 출입구를 향하여 종렬로 사행시키는 종렬 사행 방식과 횡렬로 사행시키는 횡렬 사행 방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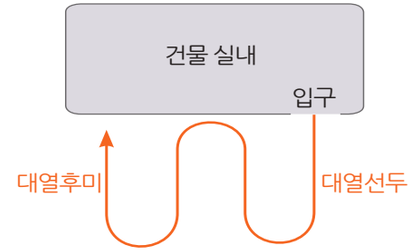

종렬 사행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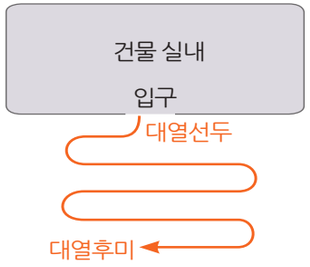

횡렬 사행 방식

- 장점 일정한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
- 단점 보행 거리가 길어짐
- 고려사항 사행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둥을 매립한 고정식의 견고한 구획 바리케이드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 로프를 적절하게 변경함으로써 군중의 수에 따라 정렬 방식 조정

출입구가 하나 이상인 경우

- 출입구가 3개 있는데 4열로 정렬시킨 경우, 출입구 부근에서 열이 섞이면서 군중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군중을 정렬시킬 때에는 일반적으로 출입구 수와 군중의 열을 같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군중 대기 장소의 폭이 넓은 경우, 출입구의 배수로 정렬시키는 것도 효과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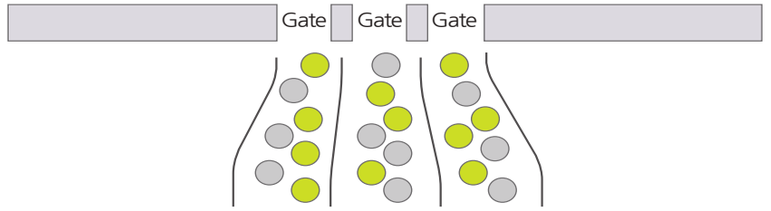

2. 장비 및 시설 유지 계획

- 이벤트 장소뿐 아니라 설비나 용구, 부대시설 등의 물리적인 공간 모두를 정리 및 점검하고 이후에 다른 이벤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 유지
- 스포츠 이벤트 점검표를 작성하고 사용함으로써 장비 및 시설 현황을 명확히 파악
- 점검 후 직접처리, 보수 의뢰, 보고 등 사후 조치

3. 스포츠 이벤트 평가하기

- 스포츠 이벤트 참가자들의 이벤트 개선점 등 평가
- 직원, 감독, 임원, 선수를 대상으로 이벤트 진행에 관한 설문을 통해 개선점 파악
- 설문은 이벤트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

예시 스포츠 이벤트 평가 리스트(운영자 용)

체크리스트

1. 이벤트는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었는가?
2. 스포츠 이벤트 참여 전에 안전교육은 진행되었는가?
3. 스포츠 시설과 장비의 상태는 안전하게 관리되었는가?
4. 사고 시 대피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가?
5. 이벤트 기간(시간, 경기방법, 게임 운영 등)은 안전하게 진행되었는가?
6. 스포츠 이벤트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꼈는가?
7.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의 장소와 시간을 제공받았는가?
8. 다음 이벤트에도 참가할 것인가?

※ 기타 의견

예시 안전한 스포츠 이벤트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이벤트 안전 관리 계획

1.이벤트의 전반적인 안전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이벤트 안전 방침이 정립되어 있는가?
3.스포츠안전사고 빈발 원인을 파악하였는가?
4.이벤트 사전 계획서를 검토하였는가?
5.이벤트 참가자 규모 및 정보에 대해 파악하였는가?
6.필요한 보험 사항은 확인하였는가?
7.비상시 안전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8.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는 수립되었는가?
9.이벤트에 필요한 안전요원 수가 충분히 확보 되었는가?

시설 안전 관리 사항

10.경기장 시설 상태는 모두 점검하였는가?
11.경기장 외부 시설(주차장, 부대시설, 기타 위험요소 등)을 모두 점검하였는가?
12.대피경로, 소방장비, 경보 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상태를 점검, 확인하였는가?
13.안전사고 예방 장치를 설치하였는가?
14.장비 및 시설의 유지, 보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비상시 안전 대책 관련 사항

15.비상시 사고 수습 조직이 탄력적으로 운영되는가?
16.조직 내 임무가 명확히 구성되어 있는가?
17.사고보고 체계가 구성되어 있고 관련 직원들이 숙지하고 있는가?
18.안전사고 발생 시 직원들이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19.관련 직원 및 안전요원이 응급 처치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안전 교육 관련 사항

20.관련 직원들에 대한 안전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1.안전요원들의 안전 관련 지식수준은 충분한가?
22.이벤트 참가자들에게 안전 규정을 숙지시켰는가?

예시 **스포츠안전 동의서**

스포츠안전 동의서

본인은 (*스포츠 종목명*)이 격렬한 신체적 활동(신체적 활동의 구체적인 모습 기록, 높이 뛰거나 날고, 신체 접촉이 있으며, 수상 상황이며 등)을 수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본인은 (　　)에 참가하는 것이 부상의 위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부주의와 상관없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발생 가능한 부상은 다음과 같으며 제시하지 않은 기타 부상도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발생가능성이 높은 부상을 중심으로 치명적인 부상의 종류 제시
→
이러한 부상들은 다음과 같은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위에서 제시한 부상에 대한 일반적인 위험 요소(라켓이나 볼에 맞거나 혹은 태클 과정에서 머리가 부딪히는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
→
제시된 부상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 제시
→
지도자는 부상 방지를 위한 조치 방법 제시
→

본인은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스포츠안전을 위해 스포츠 지도자 및 관계자의 정당한 요구에 따를 것에 동의한다. 또한 모두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며, 안전 규정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였을 시 이를 즉시 보고하고, 위험한 상황이나 용구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지도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본인의 건강상태는 (　　)에 참가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
다음은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본인이 느끼고 있는 신체적 상황이다. (　　)에 참여하는 것이 본인의 부주의와 상관없이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발생 가능한 부상은 위와 같으며 제시하지 않은 기타 부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본인은 (　　)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 본인은 이상의 내용들을 숙지하였으며,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충분히 판단하고 이해하였다.

본인은 스포츠 참여와 관련한 정보들을 취득하였고, 참여하는 동안 어떠한 신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신체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숙지하고, 참가하는 스포츠 활동의 안전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에 동의한다. 이에 본인은 자발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을 인정한다.

20　년　월　일　　(서명)

부록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100% 활용하기

1.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란?

스포츠 활동 중 또는 행사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스포츠 참여를 독려하고, 더 나아가 스포츠 안전공제서비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안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2. 스포츠공제서비스의 필요성

1) 스포츠 활동 중 사고 발생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8천여건의 사망** 또는 **부상 발생**
(스포츠안전재단 단체상해공제 가입자 기준)

2) 스포츠 관련 사고 현황

생활체육활동 중 상해유형별 상해사고 현황 (단위 : 건 / 천원)

연도	구분	사망	후유장애	돌연사	상해	배상	계
2012	사고건수	6	2	2	1,897	246	**2,153**
	손 해 액	110,000	5,000	20,000	908,768	104,430	**1,148,198**
2013	사고건수	1	-	3	1,676	233	**1,913**
	손 해 액	20,000	-	30,000	825,707	101,848	**977,555**
2014	사고건수	1	5	-	1,315	304	**1,625**
	손 해 액	10,000	51,779	-	629,527	147,959	**839,265**
2015	사고건수	3	4	-	1,086	303	**1,396**
	손 해 액	80,066	39,050	-	582,344	170,486	**871,946**
2016	사고건수	2	4	-	640	198	**844**
	손 해 액	120,877	45,264	-	275,938	107,909	**549,988**

자료 : 스포츠공제서비스 통계('12~'16.8,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제외), 스포츠안전재단

생활체육활동 중 종목별 상해사고 현황

(단위 : 명 / %)

종목	가입자 수(점유율)		사고건수(점유율)	
야 구	267,921	8.3%	2,973	37.5%
축 구	754,291	23.4%	1,269	16.0%
자 전 거	124,021	3.9%	829	10.5%
스키/스노보드	44,635	1.4%	444	5.6%
게 이 트 볼	133,890	4.2%	212	2.7%
승 마	39,360	1.2%	165	2.1%
격 투 기	215,904	6.7%	143	1.8%
행/패러글라이딩	11,555	0.4%	114	1.4%
농 구	78,710	2.4%	106	1.3%
배 드 민 턴	100,772	3.1%	103	1.3%
기 타	1,448,339	45.0%	1,573	19.8%
합계	**3,219,398**	**100.0%**	**7,931**	**100.0%**

자료 : 스포츠공제서비스 통계('12~'16.8,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제외), 스포츠안전재단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현황

연도	가입건수	보험료(천원)	사고건수	손해액(천원)
2010년	9,968	7,191,388	3,805	5,571,689
2011년	9,939	7,592,939	3,559	7,005,695
2012년	10,231	7,453,291	3,698	5,814,117
2013년	10,631	10,187,652	3,927	6,309,074
2014년	11,012	9,699,080	5,636	19,206,703

자료 : '15년 손해보험통계연보, 보험개발원

주요 체육시설별 사고 유형

구분	사고사례	사고유형
실내수영장	· 보일러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 수위조절판에 머리 충돌 · 샤워장에서 미끄러짐 · 풀 바닥에 머리 충돌	물기에 의한 사고 및 안전지침 미비 사고
실내체육관	· 천장에서 스탠드 추락 · 청소 부실로 인한 사고 · 전선 정리 부실로 인한 이용자 사고 · 정전으로 인한 러닝머신 이용자 사고	시설물 관리상 과실 사고
빙 상 장	· 스케이팅 중 파인 얼음에 걸려 넘어짐 · 안전요원의 안전 관리상 과실로 인한 사고 · 안전펜스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빙판 관리 및 안전 요원 과실 사고
종합운동장	· 잔디 정리 기계와 휠체어 충돌 · 경기 관람 중 의자에 손이 끼는 골절 · 지붕 위 결빙되었던 눈덩어리 낙하 · 지반 침하로 트랙 유실되어 일어난 사고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파손, 복구 작업으로 인한 사고
승 마 장	· 승마 강습 중 이용자 추락 · 말에게 충격을 입는 상해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지침 미준수 사고

3. 스포츠안전 보험 및 법령

1) 스포츠안전 보험

사고 원인별 구분

사고원인	해당 보험	가입 대상
체육 활동 중 상해	개인(단체) 상해 보험 전문체육인공제 서비스	체육 활동자 본인
시설운영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체육시설 운영자 (등록 · 신고자)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	주최자(행사운영자) 배상책임보험	체육행사 운영자

2) 스포츠안전 관련 법령 및 보험

의무보험	임의보험
·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 생활체육진흥법(시행 2016.3.28.) (주최자 배상책임보험)	· 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 · 개인(단체) 상해보험

알아두기 스포츠안전 관련 법령

생활체육단체 보험 가입 의무화

생활체육진흥법 제12조(보험 등 가입) –시행 2016.3.28.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체육시설 관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규칙 제25조(보험 가입)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 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 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도지사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③ 법 제26조 단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련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을 설치 경영하는 자' 를 말한다.

법 제40조(과태료)

제 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4.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Q&A

Q 어떠한 상해가 보상 대상인가요?

A 체육 활동 중 우연하고 급격하게 발생한 사고에 의한 신체 상해가 대상입니다. 단, '질병'은 보상의 대상이 아닌 점에 유의하세요.

Q 어떠한 활동 중 사고를 보상해주나요?

A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는 가입 기간 중 발생한 ① 체육 활동 중 사고, ② 경기(행사) 참가 중 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Q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스포츠안전재단홈페이지(www.sportsafety.or.kr)에서 회원가입 후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 후 등록을 하시고, 공제회비를 납부해주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가입 →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온라인 접수 → 공제회비 납부 → 가입 완료

Q 개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개인으로는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제공하는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주최자배상책임공제 제외)는 단체상해보험으로 5인 이상의 단체(체육단체, 동호회 등)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 가입 이후 인원의 추가는 1명이라도 가능합니다.

Q 전문체육인도 공제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A 현재 프로스포츠 단체 및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에 등록된 선수, 지도자들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재단에서는 종목 위험도에 따라 4가지 유형별 경기, 훈련, 이동 중 상해 등을 보상하며 심각한 부상 시 후유장애 진단을 통한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스포츠안전재단
KOREA SPORTS SAFETY FOUNDATION

“이 교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스포츠안전교육을 받고 싶다면?

스포츠안전재단 T. 02-425-5952 / www.sportsafety.or.kr

스포츠안전공제서비스에 가입하고 싶다면?

스포츠안전공제 콜센터 T. 1899-0547